

2020년 12월 11일 발행인·편집인 : 이용섭·김용승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6219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33호

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9일
광 주 광 역 시 장

제7조제3항 중 “보호대상자” 를 “지원대상자” 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다른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를 “따라” 로 한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27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정이유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9조의 제목 “(자격증 가점)” 을 “(가산점평정)” 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사항 및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자격증 정비 등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시 인사 규칙에 반영

제29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의3에 따라 부여하는 가산점의 기준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요내용

1.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및 그에 대한 가산점은 별표15와 같다.

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자격증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던 종전 규정을 특정한 직위 근무경력 가산점, 실적 가산점에 관한 내용까지 확대하여 규정(안 제29조, 별표15, 별표16)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산점은 별표16과 같다.

- 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
 - 보호대상자 용어를 지원대상자로 명칭 변경(안 제7조제3항)
 - 공무원 임용령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18조제5항)
 - 연구직·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개선내용 중 오류사항 수정(안 제27조의2)
 - 경력경쟁임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별표2, 별표4,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3, 별표7의4 별표9, 별표11, 별표15, 별표16, 별지 제1호서식)

3.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부여 대상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3. 의견제출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참조: 인사정책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hu92@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3) 팩스 : 062-613-6269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종전의 기준에 의한 가산점을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전화 613-627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의 「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응시수수료) ①~② (생략)	제7조(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	③ ----- ----- ----- - 지원대상자 -----

<p>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18조(경력경쟁시험등의 응시자격) ①~④ (생략)</p> <p>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10]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하며, ...후략...</p> <p>제27조의 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생략)</p> <p>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p> <p>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경력연수 산입)</p> <p>제29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등의 종류와 그 가산점은 [별표15]와 같다.</p>	<p>제18조(경력경쟁시험등의 응시자격) 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따라-----</p> <p>제27조의 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p> <p>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p> <p>제29조(가산점 평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의3에 따라 부여하는 가산점의 기준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및 그에 대한 가산점은 별표15와 같다.</p> <p>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산점은 별표16과 같다.</p> <p>3.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부여 대상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p>
--	--

2. 주요내용

- 신규 제작한 ‘오매나’ 캐릭터를 시 상징 캐릭터에 추가 지정
- 명칭이 명시되지 않은 기존 시 상징 캐릭터에 ‘빛돌이’ 명칭 지정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참조: 정책기획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jkjang1@korea.kr
- 2) 주소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
- 3) 팩스 : 062-613-23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실(☎ 062-613-23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사-공고/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34호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신규 제작한 ‘오매나’ 캐릭터를 시 상징 캐릭터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시 상징 캐릭터에 ‘빛돌이’ 명칭을 지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제3조 제3호 관련 별표 3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별표 3]

광주광역시 캐릭터
(제3조제3호 관련)

1. 기본캐릭터(빛돌이)

가. 기본형명

- 1) 광주의 상징인 예향(藝鄕), 의향(義鄕), 미향(味鄕)을 형상화하여 광주와 광주인을 새롭게 표현함.



2)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태양의 빛을 기본 소재로 하여 21세기 온우리를 밝혀 나갈 광주의 의지를 담고 있다.

2. 문화관광 캐릭터(오매나)
가. 기본형



정면



옆면



뒷면

나. 내용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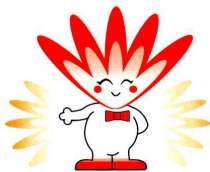
- 1) 오매나는 빛 광(光) 자를 모티브로 의인화하여 만들어졌으며 빛의 3원색인 빨강, 녹색, 파랑과 합성색인 흰색, 노랑을 사용해 오색으로 표현함.
- 2) 오매나는 전라도 사투리로 놀라움을 표현하는 감탄사이며 머리 위 삼색 안테나를 휘날리며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광주의 매력과 행복 스토리를 전파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고] 현행 규정

【별표 3】

광주광역시 캐릭터

1. 기본형



2. 내용설명

- 광주의 상징인 예향(藝鄕), 의향(義鄕), 미향(味鄕)을 형상화하여 광주와 광주인을 새롭게 표현함.
-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태양의 빛을 기본 소재로 하여 21세기 온우리를 밝혀 나갈 광주의 의지를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35호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시민의 권익구제 활성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법적분쟁 사전 검토 지원 역할 등 법률분야 직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담당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운영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법무담당관 개방형 직위 지정 (안 제11조제3항)
 - 법무담당관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5. 의견제출

본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
 - ※ (전화) 613-2351, (팩스) 613-2329

붙임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광주광역시 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혁신소통기획관·인사정책관”을 “혁신소통기획관·인사정책관·청년정책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9호를 제3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9. 시보(목·점자) 및 공보 발행에 관한 사항
-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
- 제6조의2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3(청년정책관) ① 청년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청년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 총괄
 2.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청년정책사업 관리 및 지원
 4.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구성·운영, 광주청년센터 운영
 5.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6.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7. 청년정책 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운영
 8. 청년일자리 일자리 업무 총괄
-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스마트도시담당관·정보화담당관·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스마트도시담당관·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에 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국정감사 업무 총괄
3. 대선공약·시장공약·역점시책 관리
4.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5. 광우원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서울본부 지도·감독
7. 시정정책자문단 운영
8.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및 자치구 의회 운영 지원
9.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0. 사무분장, 사무위임·위탁 및 전결규정의 조정
11. 자치구의 조직 및 정원관리 지도
12. 정책개발 및 시정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13.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
14. 각종 위원회 운영 총괄
15. 용역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
16. 창의 및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17. 제안제도,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18. 광주전남연구원 운영 지원
19.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20. 신광주 메트로폴리탄 건설에 관한 사항
21. 시 상징물(CI, BI)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회계 예산편성·배정·전출금·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
2. 일반회계 예산운영·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연구
3.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 조정
4. 자치구 재정운영 분석평가·지도
5. 지방교부세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관리
6.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운영관리
7.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및 지방채 총괄관리
8.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영
9.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관리
10. 투자사업 심사(민자사업은 제외) 및 우선순위 결정
11. 특별회계 예산편성·배정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재정연감 자료작성(예산편)
13. 공기업(직영기업, 공사·공단)운영의 종합기획 조정
14. 공사·공단 설립 등 공기업화추진
15. 공사·공단 임원 임명 및 임면 승인
16. 공기업의 예산편성지침 발달
17. 도시공사의 관련법규, 정관, 운영규정, 결산 등에 관한 사항(다만, 도시공사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당해 사업관련부서에서 담당)
18. 중·장기재정계획 수립 및 경영수익사업 종합계획
19. 각종 기금 종합관리 및 자치복권 운영관리
20. 출자·출연기관·단체 등에 대한 총괄관리
21.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총괄에 관한 사항
22. 성인지 예산 편성 및 확정
23.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총괄

⑥ 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2. 시정시책 추진상황 확인 및 평가
3. 자체평가, 정부합동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지시사항 처리 확인·평가
5. 공약평가 시민배심원제 운영

⑦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시행 및 총괄
2.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기획·발굴
3. 스마트도시 시스템 관리

4. 스마트도시 관련 규정 및 제도·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홍보
6. 신기술 기반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조사 및 발굴
7. 도시데이터 활용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 및 성과관리
8. 데이터중심 행정 활성화기반 구축 및 운영
9.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계획 수립·조정
10. 빅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공공·민간기관 빅데이터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12.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5. 통계행정에 관한 기획·심사·조사 등에 관한 사항
16.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조정
2. 지역·행정정보화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6.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 교육장 운영
7. 시·도 우수개발업무 표준화 및 보급관리
8. 정보시스템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정보통신망·시정종합정보통신망·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운영
10.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
11. 국가지도 통신망 운영관리(유·무선)
12. 전자정부통합망 등 유무선 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13. 행정통신시설 및 방송(영상·음향)시설 운영·관리
1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공사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6.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자체 지역통합전산센터 유치 추진
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9.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20.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운영
21. 지상파TV 디지털 전환사업에 관한 사항
22.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23.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24.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5. 스마트행정 서비스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26. 스마트행정 총괄 조정
27. 스마트 행정서비스 운영·관리
28.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추진
29. 스마트 행정서비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0.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1. 디지털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⑨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과 법제 자료의 조사·수집 및 연구
2. 조례·규칙의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3.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및 행정행위 법률적 검토
4. 조례·규칙·훈령·예규 관리
5. 자치구의 자치법규 심사·지도 및 소송사무 지도
6.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7.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8.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9.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10.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11.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12.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운영 조례(현장) 제정 운영
13.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애로 발굴
14. 지방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15. 법률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행정심판처리에 관한 사항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사항
18. 소송의 종합적 총괄·심사·조정·소송지휘에 관한 사항
19.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및 소청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20. 부서 소관업무 법률 지원
2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⑩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 종합 기획·조정 및 총괄

2. 공무국의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3.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및 확대 추진
4. 해외 자매·우호도시 주요행사 추진
5.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 관련 업무
6. 해외 외빈 초청 인사 통역 지원
7. 해외 자매·우호도시 등 교류 DB화 추진
8. 중국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9.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추진 및 조정
10. 중국교류 자원 구축 및 관리
11. 광주 거주 외국인 네트워크 관리 운영
12. 국제교류센터 및 글로벌 라운지 지원 업무
13. 주한 대사관 및 국제기구 조정·관리 업무
14. 해외 향우회 관리 및 지원
15. 국제관계대사 지원 업무
16. 타 부서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 지원

제1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해양항평가 등의 협의·이행관리·감독

제12조의2제1항 중 “자치행정과·총무과·균형발전정책”을 “자치행정과·총무과·균형발전정책과·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총무과장·회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총무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총괄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관리·지원

제12조의2제3항제3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인사·복무·노무”를 “정원·인사·복무·노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시도 통합에 관한 사항

⑦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지방세제의 운영
3. 지방세 부과·징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체납관리 지도·감독 및 고액체납시세 징수
5. 세원의 조사·발굴 및 지도
6. 탈세정보 처리 및 조세범 처리절차에 의한 범칙사건 처리
7.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및 승인
8. 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9. 종합부동산세 지원 업무
10.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등 구제제도 운영
11. 지방세 관련 각종위원회 운영
12.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관리
13. 세외수입 업무의 기획 및 조정
14. 수수료·사용료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5.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16. 세입총괄·결산 및 총괄채권 관리
17.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수립
18. 시금고 및 시금고 수납대행점 약정 및 지도·검사
19.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0.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지도·감독
21. 지방소득세 공제 감면정책 운용
22. 지방소득세 관련 법인 세무조사 및 불복청구 처리
23. 소득세제 제도개선 추진 등
24. 지난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단체 채권 관리지침에 따른 채권은 제외)

제14조의2제1항 전단 중 “청년청소년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청년청소년과장”을 각각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6호 및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성범죄자의 청소년(활동지원) 시설, 청소년 활동기획업소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37. 성범죄자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허용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제15조제1항 중 “환경정책과·기후대기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물순환정책”을 “기후환경정책과·대기보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물순환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대기보전과장·자원순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환경교육·홍보, 환경분쟁 조정 및 위원회 운영”을 “환경교육·홍보”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제22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제3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적응대책 수립·추진

30. 온실가스 저감목표설정 및 저감사업 추진
31. 기후변화대응 산·학·연 기술협력사업 추진
32. 탄소은행제도 운영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33. 국제기후환경센터 지도·감독
34. 기후행동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대기과장”을 “대기보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3호부터 제3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환경분쟁 조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4. 소음·진동, 악취·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35. 대기·수질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방지사설업 등의 등록 및 관리
36.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37. 석면 안전관리(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피해구제급여 지원,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처리 지원 등)
38. 빗공해 관리

제16조제1항 중 “도시계획과·도시재생정책과·도시정비과·건축주택”을 “도시계획과·도시재생정책과·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주택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 및 도시재생정책과장”을 “도시계획과장·도시재생정책과장 및 주택정책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건축주택과장”을 “도시정비과장·도시경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7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주택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6호 및 제27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부터 제5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2. 한옥 등 건축자산(근대건축물 포함)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33. 녹색건축물 조성 및 관리계획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4.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
35.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36. 공공디자인 정책 개발 및 총괄·조정
37.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행사, 국제협력
38.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39.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40. 도시경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41.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단위사업 추진
42. 빛고을 밝은도시 조성사업
43. 민간건축물 야간경관 지원사업
44. 경관시범마을 만들기
45.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6. 경관계획 수립 및 단위사업 추진
47.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8. LUC(세계빛도시연합) 총회에 관한 사항
49.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0. 총괄·공공건축가 선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8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8. 측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⑧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거종합계획 수립·조정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업무
3. 주택건설사업 건축계획 심의 업무
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업무
6.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 및 운영
7.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관한 사항
8.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업무 추진
9.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환급 관련 업무
10. 주택 불법 전매행위 수사(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1. 전월세 보증금 분쟁 조정 추진
12.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관리 업무
13. 주거급여 지원사업 업무 추진
14.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지원
1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업무
16.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17.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업무 추진 및 총괄
1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9.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사업 추진
20.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한 행정지도

21.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자문위원, 지원단) 업무 추진
 22.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23.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
 24.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25. 주택관리사(보)자격 시험·교육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6.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27.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8.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9. ‘행복한 목수’ 저소득층 주택 리모델링 사업
 30.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근거관리
- 제17조제3항제44호를 제4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4호 및 제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20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한다.
44. 관찰구역내의 일반물류단지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5.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4제7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김대중컨벤션센터 지도·감독
 21. 광주관광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4제8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삭제한다.
23.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청산단 지원 및 대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5제3항제3호 중 “여성·노인·청년·장애인·경제·문화 등 계층·분야별”을 “계층·분야별”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6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제11호를 삭제한다.
19. 수출 진흥정책 수립·추진
 20.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수출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
 21. 수출·입 등 통상 관련 동향 파악·관리
 22.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사업 추진
- 제21조제1항 중 “미래산업정책과·인공지능정책과·자동차산업과·에너지산업과·스마트시티과”를 “미래산업정책과·인공지능정책과·자동차산업과·에너지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스마트시티과장은 지방서기관”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3호를 제6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3호부터 제5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ICT융합산업 종합 기획
 54. IT융합산업·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55. ICT 및 3D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56. 지역 IT·SW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57.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및 지역 SW 융합지원에 관한 사항
 58. IT·SW산업 육성 전문 인력양성
 59. 호남권 SW품질역량사업 운영·지원
- 제21조제4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13.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22조의2제1항 중 “119종합상황실 및 119특수구조단”을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 및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19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구조단장,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시민 안전체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시민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전시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관람·체험객의 교육 및 체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체험교육 운영통계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8. 교관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전시·체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청사·물품 관리,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운영보조인력(용역, 자원봉사)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6조 중 “총무과·식품의약품연구부·감염병연구부·환경연구부”를 “연구지원과·식품의약품연구부·감염병연구부·환경연구부”로 한다.
- 제27조의 제목 (“총무과”)를 (“연구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을 각각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 제28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0호를 삭제한다.

8. 식품 중 방사능 검사
-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9조(환경연구부에 두는 과(科)) ① 환경연구부에 미세먼지분석과·물환경조사과·대기환경과·먹는물검사과·생활환경과·산업폐수과를 둔다.
- ②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하고, 각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미세먼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3. 미세먼지 및 오존정보계 운영
 4.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운영
 5. 대기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조사
 6. 소관분야에 관련된 시험·조사·연구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물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 및 호소수 수질오염도 검사
 2. 수질측정망 운영
 3. 수질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
 4.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조사
 5.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6. 수처리계 규격검사
 7. 생태독성 검사
 8. 소관분야에 관련된 시험·조사·연구
- ⑤ 대기환경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2. 유류중 황 함유량 검사
 3.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오염도 검사
 4.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비산석면 검사
 5. 대기·악취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
 6. 소관분야에 관련된 시험·조사·연구
- ⑥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수돗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정수기 등) 수질검사
 2. 지하수(음용·농업·공업·생활용수) 수질검사
 3. 민방위비상급수, 목욕장 목욕물, 수영조 욕수 등 수질검사
 4. 수중 이온물질 및 미량물질 성분 검사
 5. 지하수 수질측정망 검사
 6. 수질 미생물 검사
 7. 먹는물 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
 8. 소관분야에 관련된 시험·조사·연구
- ⑦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
 2. 신축공동주택 사업장 오염도 검사
 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
 4. 실내공기질·환경유해인자(어린이활동공간)분야 정도관리
 5.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 측정
 6. 환경소음측정망의 운영
 7. 「공동주택 교통소음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예측소음도 평가
 8.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조사·연구
- ⑧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수 배출시설 방류수 검사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검사
 3. 중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4.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
 5. 토양 오염 실태조사
 6. 환경기초시설 검사요원 기술 교육
 7. 토양 및 폐기물 중의 석면 검사
 8. 수질·폐기물·토양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
 9. 소관분야에 관련된 시험·조사·연구
- 제57조의2제2항 중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를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로 한다.
- 제59조제4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디지털정보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 제71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삭제한다.
5. 전시설·도서관 운영·관리
- 제7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투자유치부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건축주택과 주택담당”을 “주택정책과 주택정책담당”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좌기관) ① (생략)	제4조(보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부시장 밑에 <u>혁신소통기획관</u> · <u>인사정책관</u> 둔다.	② ----- <u>혁신소통기획관</u> · <u>인사정책관</u> · <u>청년정책관</u> 을 -----
③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대변인) ①·② (생략)	제5조(대변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
1. ~ 28. (생략)	1. ~ 28. (현행과 같음)
<신설>	<u>29. 시보(목·접자) 및 공모 발행에 관한 사항</u>
<u>29.</u> (생략)	<u>30. (현행 제29호와 같음)</u>
제6조(혁신소통기획관) ① (생략)	제6조(혁신소통기획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혁신소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②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보(목·접자) 및 공모 발행에 관한 사항	<삭제>
5. ~ 14. (생략)	5. ~ 14. (현행과 같음)
<신설>	15.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
<신설>	제6조의3(청년정책관) ① 청년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청년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 총괄 2.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청년정책사업 관리 및 지원 4.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구성·운영, 광주청년센터 운영 5.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6.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7. 청년정책 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운영 8. 청년일자리 일자리 업무 총괄
제6조의2(인사정책관) ① (생략)	제6조의2(인사정책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②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설>	14.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제11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예산담당관·	제11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예산담당관·

- 평가담당관·세정담당관·정보화담당관·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 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세정담당관·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국정감사 업무 총괄
 3. 대선폭약·시장공약·역점시책 관리
 4.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5. 광주원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서울본부 지도·감독
 7. 시정정책자문단 운영
 8.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및 자치구 의회 운영 지원
 9.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0. 사무분장, 사무위임·위탁 및 전결 규정의 조정
 11. 자치구의 조직 및 정원관리 지도
 12. 삭제
 13. 정책개발 및 시정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14.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
 15. 각종 위원회 운영 총괄
 16. 용역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
 17. 창의 및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18. 제안제도,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19. 광주전남연구원 운영 지원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28. 삭제
 29. 신광주 메트로폴리탄 건설에 관한 사항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삭제
 35. 시 상정물(CI, BI)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회계 예산편성·배정·전출금·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
 2. 일반회계 예산운영·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연구
 3. 일반회계 세부부담행위 조정
 4. 자치구 재정운영 분석평가·지도
 5. 지방교부세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관리
 6.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운영관리
 7.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및 지방채 총괄관리
 8.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영
 9.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관리
 10. 투자사업 심사(민자사업은 제외) 및 우선순위 결정
 11. 특별회계 예산편성·배정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재정연감 자료작성(예산편)
 13. 공기업 (직영기업, 공사·공단)운영의 종합기획 조정
 14. 공사·공단 설립 등 공기업화의 추진
 15. 공사·공단 임원 임면 및 임면 승인
 16. 공기업의 예산편성지침 시달
 17. 도시공사의 관련법규, 정관, 운영규정, 결산 등에 관한 사항(다만, 도시공사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당해 사업관련부서에서 담당)
 18. 중·장기재정계획 수립 및 경영수의 사업 종합계획
 19. 각종 기금 종합관리 및 자치복권 운영관리
 20. 출자·출연기관·단체 등에 대한 총괄관리
 21.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총괄에 관한 사항
 22. 성인지 예산 편성 및 확정
 23.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 평가담당관·스마트도시담당관·정보화담당관·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 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스마트도시담당관·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법무담당관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④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국정감사 업무 총괄
 3. 대선폭약·시장공약·역점시책 관리
 4.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5. 광주원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서울본부 지도·감독
 7. 시정정책자문단 운영
 8.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및 자치구 의회 운영 지원
 9.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0. 사무분장, 사무위임·위탁 및 전결 규정의 조정
 11. 자치구의 조직 및 정원관리 지도
 12. 정책개발 및 시정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13.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
 14. 각종 위원회 운영 총괄
 15. 용역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
 16. 창의 및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17. 제안제도,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18. 광주전남연구원 운영 지원
 19.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20. 신광주 메트로폴리탄 건설에 관한 사항
 21. 시 상정물(CI, BI)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⑤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회계 예산편성·배정·전출금·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
 2. 일반회계 예산운영·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연구
 3. 일반회계 세부부담행위 조정
 4. 자치구 재정운영 분석평가·지도
 5. 지방교부세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관리
 6.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운영관리
 7.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및 지방채 총괄관리
 8.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영
 9.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관리
 10. 투자사업 심사(민자사업은 제외) 및 우선순위 결정
 11. 특별회계 예산편성·배정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재정연감 자료작성(예산편)
 13. 공기업 (직영기업, 공사·공단)운영의 종합기획 조정
 14. 공사·공단 설립 등 공기업화의 추진
 15. 공사·공단 임원 임면 및 임면 승인
 16. 공기업의 예산편성지침 시달
 17. 도시공사의 관련법규, 정관, 운영규정, 결산 등에 관한 사항(다만, 도시공사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당해 사업관련부서에서 담당)
 18. 중·장기재정계획 수립 및 경영수익사업 종합계획
 19. 각종 기금 종합관리 및 자치복권 운영관리
 20. 출자·출연기관·단체 등에 대한 총괄관리
 21.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총괄에 관한 사항
 22. 성인지 예산 편성 및 확정
 23.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 ⑥ 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수립

<p>가 총괄</p> <p>⑤ 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정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2. 시정시책 추진상황 확인 및 평가 3. 자체평가, 정부합동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지시사항 처리 확인·평가 5. 공약평가 시민배심원제 운영 6. 삭제 <p>⑥ 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지방세세의 운영 3. 지방세 부과·징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체납관리 지도·감독 및 고액 체납사세 징수 5. 세원의 조사·발굴 및 지도 6. 탈세정보 처리 및 조세범 처벌절차에 의한 벌칙사건 처리 7.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및 승인 8. 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9. 종합부동산세 지원 업무 10.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등 구제제도 운영 11. 지방세 관련 각종위원회 운영 12.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관리 13. 세외수입 업무의 기획 및 조정 14. 수수료·사용료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5.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16. 세입총괄·결산 및 총괄채권 관리 17.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수립 18. 삭제 19. 시금고 및 시금고 수납대행점 약정 및 지도·검사 20. 삭제 2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2.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지도·감독 23. 지방소득세 공제 감면정책 운용 24. 지방소득세 관련 법인 세무조사 및 불복청구 처리 25. 소득세제 제도개선 추진 등 26. 지연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채권은 제외) <p>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조정 2. 지역·행정정보화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6.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 교육장 운영 7. 삭제 8. 삭제 9. 시·도 우수개발업무 표준화 및 보급 관리 10. 정보시스템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국가정보통신망·시정종합정보통신망·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운영 12.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 13. 국가지도 통신망 운영관리(유·무선) 14. 전자정부통합망 등 유무선 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15. 행정통신시설 및 방송(영상·음향) 시설 운영·관리 1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공사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8.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 지자체 지역통합전산센터 유지 추진 21.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2.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23.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운영 24. 지상파TV 디지털 전환사업에 관한 사항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31. 삭제 	<p>및 평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시정시책 추진상황 확인 및 평가 3. 자체평가, 정부합동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지시사항 처리 확인·평가 5. 공약평가 시민배심원제 운영 ⑦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시행 및 총괄 2.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기획·발굴 3. 스마트도시 시스템 관리 4. 스마트도시 관련 규정 및 제도·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홍보 6. 신기술 기반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조사 및 발굴 7. 도시데이터 활용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 및 성과관리 8. 데이터중심 행정 활성화기반 구축 및 운영 9.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계획 수립·조정 10. 빅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공공·민간기관 빅데이터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12.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5. 통계행정에 관한 기획·심사·조사 등에 관한 사항 16.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p>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조정 2. 지역·행정정보화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6.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 교육장 운영 7. 시·도 우수개발업무 표준화 및 보급 관리 8. 정보시스템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정보통신망·시정종합정보통신망·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운영 10.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 11. 국가지도 통신망 운영관리(유·무선) 12. 전자정부통합망 등 유무선 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13. 행정통신시설 및 방송(영상·음향) 시설 운영·관리 1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공사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6.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자체 지역통합전산센터 유지 추진 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9.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20.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운영 21. 지상파TV 디지털 전환사업에 관한 사항 22.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23.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24.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5. 스마트행정 서비스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26. 스마트행정 총괄 조정 27. 스마트 행정서비스 운영·관리 28.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추진 29. 스마트 행정서비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0.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1. 디지털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p>⑨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과 법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32.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33.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4. 스마트행정 서비스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35. 스마트행정 총괄 조정 36. 스마트 행정서비스 운영·관리 37. 삭제 38.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추진 39. 삭제 40. 스마트 행정서비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41.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2. 그 밖에 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p>⑩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과 법제 자료의 조사·수집 및 연구 2. 조례·규칙의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3.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및 행정행위 법률적 검토 4. 조례·규칙·훈령·예규 관리 5. 자치구의 자치법규 심사·지도 및 소송사무 지도 6.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7.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8. 삭제 9.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10.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11.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12.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에로 발굴 및 제도개선 13.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운영 조례(현장) 제정 운영 14. 지방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규제에로 해소 15. 지방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규제에로 해소 16. 삭제 17. 법률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행정심판처리에 관한 사항 1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사항 20. 소송의 종합적 총괄·심사·조정·소송지휘에 관한 사항 21. 소정심사위원회 운영 및 소정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22. 통계행정에 관한 기획·심사·조사 등에 관한 사항 23.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부서 소관업무 범용 지원 25.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p>⑪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 종합 기획·조정 및 총괄 2. 공무원의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3.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및 확대 추진 4. 해외 자매·우호도시 주요행사 추진 5. 전국도시지사협의회 국제교류 관련 업무 6. 해외 외빈 초청 인사 통역 지원 7. 해외 자매·우호도시 등 교류 DB화 추진 8. 중국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9.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추진 및 조정 10. 중국교류 자원 구축 및 관리 11. 광주 거주 외국인 네트워크 관리 운영 12. 국제교류센터 및 글로벌 라운지 지원 업무 13. 우한 대사관 및 국제기구 조정·관리 업무 14. 해외 향우회 관리 및 지원 15. 국제관계대사 지원 업무 16. 타 부서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 지원(11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스마트도시담당관·정보화담당관·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스마트도시담당관·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영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p>료의 조사·수집 및 연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조례·규칙의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3.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및 행정행위 법률적 검토 4. 조례·규칙·훈령·예규 관리 5. 자치구의 자치법규 심사·지도 및 소송사무 지도 6.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7.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8.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9.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10.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11.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에로 발굴 및 제도개선 12.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운영 조례(현장) 제정 운영 13.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에로 발굴 14. 지방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규제에로 해소 15. 법률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행정심판 처리에 관한 사항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사항 18. 소송의 종합적 총괄·심사·조정·소송지휘에 관한 사항 19. 소정심사위원회 운영 및 소정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20. 부서 소관업무 범용 지원 2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p>⑩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 종합 기획·조정 및 총괄 2. 공무원의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3.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및 확대 추진 4. 해외 자매·우호도시 주요행사 추진 5. 전국도시지사협의회 국제교류 관련 업무 6. 해외 외빈 초청 인사 통역 지원 7. 해외 자매·우호도시 등 교류 DB화 추진 8. 중국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9.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추진 및 조정 10. 중국교류 자원 구축 및 관리 11. 광주 거주 외국인 네트워크 관리 운영 12. 국제교류센터 및 글로벌 라운지 지원 업무 13. 우한 대사관 및 국제기구 조정·관리 업무 14. 해외 향우회 관리 및 지원 15. 국제관계대사 지원 업무 16. 타 부서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 지원(11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스마트도시담당관·정보화담당관·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스마트도시담당관·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영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	--

13.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
14. 각종 위원회 운영 총괄
15. 용역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
16. 창의 및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17. 제안제도,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18. 광주전남연구원 운영 지원
19.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20. 신광주 메트로폴리탄 건설에 관한 사항
21. 시 상징물(CI, BI)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⑤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회계 예산편성·배정·전출금·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
 2. 일반회계 예산운영·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연구
 3.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 조정
 4. 자치구 재정운영 분석평가·지도
 5. 지방교부세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관리
 6.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운영관리
 7.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및 지방채 총괄관리
 8.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영
 9.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관리
 10. 투자사업 심사(민자사업은 제외) 및 우선순위 결정
 11. 특별회계 예산편성·배정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재정연감 자료작성(예산편)
 13. 공기업 (직영기업, 공사·공단)운영의 종합기획 조정
 14. 공사·공단 설립 등 공기업화의 추진
 15. 공사·공단 임원 임면 및 임면 승인
 16. 공기업의 예산편성지침 발달
 17. 도시공사의 관련법규, 정관, 운영규정, 결산 등에 관한 사항(다만, 도시공사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당해 사업관련부서에서 담당)
 18. 중·장기재정계획 수립 및 경영수익사업 종합계획
 19. 각종 기금 종합관리 및 자치복권 운영관리
 20. 출자·출연기관·단체 등에 대한 총괄관리
 21.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총괄에 관한 사항
 22. 성인지 예산 편성 및 확정
 23.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총괄
- ⑥ 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2. 시정시책 추진상황 확인 및 평가
 3. 자체평가, 정부합동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지시사항 처리 확인·평가
 5. 공약평가 시민배심원제 운영
- ⑦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시행 및 총괄
 2.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기획·발굴
 3. 스마트도시 시스템 관리
 4. 스마트도시 관련 규정 및 제도·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홍보
 6. 신기술 기반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조사 및 발굴
 7. 도시데이터 활용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 및 성과관리
 8. 데이터중심 행정 활성화기반 구축 및 운영
 9.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계획 수립·조정
 10. 빅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공공·민간기관 빅데이터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12.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5. 통계행정에 관한 기획·심사·조사 등에 관한 사항

16.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조정
 2. 지역·행정정보화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6.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 교육장 운영
 7. 시·도 우수개발업무 표준화 및 보급관리
 8. 정보시스템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정보통신망·시정종합정보통신망·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운영
 10.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
 11. 국가지도 통신망 운영관리(유·무선)
 12. 전자정부통합망 등 유무선 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13. 행정통신시설 및 방송(영상·음향) 시설 운영·관리
 1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공사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6.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자체 지역통합전산센터 유치 추진
 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9.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20.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운영
 21. 지상파TV 디지털 전환사업에 관한 사항
 22.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23.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24.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5. 스마트행정 서비스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26. 스마트행정 총괄 조정
 27. 스마트 행정서비스 운영·관리
 28.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추진
 29. 스마트 행정서비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⑨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1. 디지털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 ⑩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과 법제 자료의 조사·수집 및 연구
 2. 조례·규칙의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3.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및 행정행위 법률적 검토
 4. 조례·규칙·훈령·예규 관리
 5. 자치구의 자치법규 심사·지도 및 소송사무 지도
 6.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7.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8.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9.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10.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11.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예로 발굴 및 제도개선
 12.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운영 조례(현장) 제정 운영
 13.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예로 발굴
 14. 지방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규제예로 해소
 15. 법률고문번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행정심판 처리에 관한 사항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사항
 18. 소송의 종합적 총괄·심사·조정·소송지휘에 관한 사항
 19.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및 소청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20. 부서 소관업무 법률 지원
 2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p>관한 사항</p> <p>⑩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 종합 기획·조정 및 총괄</p> <p>2.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p> <p>3.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및 확대 추진</p> <p>4. 해외 자매·우호도시 주요행사 추진</p> <p>5.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 관련 업무</p> <p>6. 해외 외빈 초청 인사 통역 지원</p> <p>7. 해외 자매·우호도시 등 교류 DB화 추진</p> <p>8. 중국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p> <p>9.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추진 및 조정</p> <p>10. 중국교류 자원 구축 및 관리</p> <p>11. 광주 거주 외국인 네트워크 관리 운영</p> <p>12. 국제교류센터 및 글로벌 라운지 지원 업무</p> <p>13. 주한 대사관 및 국제기구 조정·관리 업무</p> <p>14. 해외 향우회 관리 및 지원</p> <p>15. 국제관계대사 지원 업무</p> <p>16. 타 부서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 지원</p>
제12조(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① ~ ③ (생략)	제12조(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이행관리·감독	4.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이행관리·감독
5. ~ 47. (생략)	5. ~ 47. (현행과 같음)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총무과·균형발전정책과 및 회계과를 둔다.	제12조의2(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 자치행정과·총무과·균형발전정책과·세정-----.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총무과장·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자치행정과장·총무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총괄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관리·지원
16. ~ 31. (생략)	16. ~ 31. (현행과 같음)
32. 국민대통합위원회 소관업무	<삭제>
33. ~ 47. (생략)	33. ~ 47. (현행과 같음)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삭제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9.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삭제>
10. ~ 18. (생략)	10. ~ 18. (현행과 같음)
19. 정원 외 인력(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복무·노무 및 직무훈련 등에 관한 사항	19. ----- 정원·인사·복무·노무-----
20. 21. 삭제	
22. (생략)	22. (현행과 같음)
⑤ 균형발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분항신설 2020.01.01.>	⑤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설>	
⑥ 삭제	
<신설>	
⑦ 시도 통합에 관한 사항	⑦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지방세제의 운영
	3. 지방세 부과·징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체납관리 지도·감독 및 고액체납시세 징수
	5. 세원의 조사·발굴 및 지도
	6. 탈세정보 처리 및 조세범 처리절차에 의한 범죄사건 처리
	7.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및 승인
	8. 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9. 종합부동산세 지원 업무
	10.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등 구제제도 운영
	11. 지방세 관련 각종위원회 운영
	12.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관리
	13. 세외수입 업무의 기획 및 조정
	14. 수수료·사용료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5.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16. 세입총괄·결산 및 총괄채권 관리
	17.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수립
	18. 시금고 및 시금고 수납대행점 약정 및 지도·검사
	19.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0.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지도·감독
	21. 지방소득세 공제 감면정책 운용
	22. 지방소득세 관련 법인 세무조사 및 불복청구 처리
	23. 소득세제 제도개선 추진 등
	24. 지난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채권은 제외)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4조의2(여성가족국에 두는 과) ① 여성가족국에 여성가족과·출산보육과 및 청년청소년과를 둔다. <본조의조신설 2020.01.01.>	제14조의2(여성가족국에 두는 과) ① ----- 교육청 소년과-----.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여성가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출산보육과장 및 청년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 교육청소년과장-----.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청년청소년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분항신설 2020.01.01.>	⑤ 교육청소년과장-----.
1. 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 총괄	<삭제>
2.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삭제>
3. 청년정책사업 관리 및 지원	<삭제>
4.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구성·운영, 광주청년센터 운영	<삭제>
5.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삭제>
6.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7. 청년정책 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운영	<삭제>
8.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삭제>
9. ~ 35. (생략)	9. ~ 35. (현행과 같음)
<신설>	36. 성범죄자의 청소년(활동지원) 시설, 청소년 활동기획업소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37. 성범죄자의 청소년 고용 및 취업 허용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제15조(환경생태국에 두는 과) ① 환경생태국에 환경정책과·기후대기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물순환정책과 및 하수관리과를 둔다.	제15조(환경생태국에 두는 과) ① ----- 기후환경정책과·대기보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물순환정책-----.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② ----- 기후환경

환경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 및 자원순환과장 및 물순환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원녹지과장 및 하수관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환경교육·홍보, 환경분쟁 조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 14. (생략)

15. 소음·진동, 악취·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16. ~ 21. (생략)

22. 대기·수질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방지사설업 등의 등록 및 관리

23. ~ 25. (생략)

26.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27. 석면 안전관리(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피해구제급여 지원,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처리 지원 등)

28. 빛공해 관리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9. (생략)

④ 기후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적응대책 수립·추진

2. 온실가스 저감목표설정 및 저감사업 추진

3. 기후변화대응 산·학·연 기술협력 사업 추진

4. 탄소은행제도 운영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5. ~ 17. 삭제

18. ~ 23. (생략)

24. 국제기후환경센터 지도·감독

25. 기후행동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26. ~ 3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경정책과장·대기보전과장·자원순환과장

③ 기후환경정책과장

1. ~ 5. (현행과 같음)

6. 환경교육·홍보

7. ~ 14. (현행과 같음)

<삭제>

16. ~ 21. (현행과 같음)

<삭제>

23. ~ 2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29.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적응대책 수립·추진

30. 온실가스 저감목표설정 및 저감사업 추진

31. 기후변화대응 산·학·연 기술협력 사업 추진

32. 탄소은행제도 운영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33. 국제기후환경센터 지도·감독

34. 기후행동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35. (현행 제29호와 같음)

④ 대기보전과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6. ~ 32. (현행과 같음)

33. 환경분쟁 조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4. 소음·진동, 악취·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35. 대기·수질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방지사설업 등의 등록 및 관리

36.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37. 석면 안전관리(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피해구제급여 지원,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처리 지원 등)

<신설>

⑤ ~ ⑧ (생략)

제16조(도시재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재생국에 도시계획과·도시재생정책과·도시정비과·건축주택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도시계획과장 및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정비과장·건축주택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17. 공공디자인 정책 개발 및 총괄·조정

18.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행사, 국제협력

19.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20.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21. 도시경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2.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단위사업 추진

23. 빛고를 밝은도시 조성사업

24. 민간건축물 야간경관 지원사업

25. 경관시범마을 만들기

26. 삭제

27. LUCI(세계빛도시연합) 총회에 관한 사항

④ ~ ⑥ (생략)

⑦ 건축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조정

2. 국민주택용자금 회수 관리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3. 주택관리사(보)자격 시험·교육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등

5.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6. 학교용지부담금 과징업무 행정지도에 관한사항

7. ~ 11. (생략)

12. 삭제

13.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업무 추진

14. 전월세 보증금 분쟁 조정 추진

15. 삭제

16.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업무 추진 및 총괄

17. ~ 21. 삭제

22. ~ 26. (생략)

27.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분호신설 2020.01.01.>

28.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분호신설 2020.01.01.>

38. 빛공해 관리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도시재생국에 두는 과) ① ----- 도시계획과·도시재생정책과·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주택정책-----

② ----- 도시계획과장·도시재생정책과장 및 주택정책과장----- 도시정비과장·도시경관과장-----

③ -----

1. ~ 16.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도시경관과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2. ~ 26.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29. "행복한 목수" 저소득층 주택 리모델링 사업 <본호신설 2020.01.01.>	<삭 제>		<p>할</p> <p>23.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p> <p>24.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사업 추진</p> <p>25. 주택관리사(보)자격 시험·교육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26.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p> <p>27.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p> <p>28.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관리에 관한 사항</p> <p>29. "행복한 목수" 저소득층 주택 리모델링 사업</p> <p>30.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지원 근거관리</p>
30.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지원 근거관리 <본호신설 2020.01.01.>	<삭 제>	<p>⑧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6. (생략)</p>	<p>⑨ -----.</p> <p>1. ~ 16. (현행과 같음)</p>
<신 설>	3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17.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32. 한옥 등 건축자산(근대건축물 포함)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신 설>	18. 측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33. 녹색건축물 조성 및 관리계획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p>제17조(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② (생략)</p> <p>③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43. (생략)</p>	<p>제17조(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 43. (현행과 같음)</p>
<신 설>	34.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44. 관할구역내의 일반물류단지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신 설>	35.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45.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36. 공공디자인 정책 개발 및 총괄·조정	<신 설>	46. (현행 제44호와 같음)
<신 설>	37.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행사, 국제협력	<p>44. (생략)</p> <p>④ (생략)</p>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38.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p>⑤ 건설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9. (생략)</p>	⑤ -----.
<신 설>	39.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p>10. ~ 19. 삭제</p> <p>20. 감정평가업자 선정 <본호신설 2020.01.01.></p>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40. 도시경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신 설>	20. 감정평가법인 등 -----
<신 설>	41.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단위사업 추진	<신 설>	21. (현행과 같음)
<신 설>	42. 빔고를 밝은도시 조성사업	<p>⑥ (생략)</p> <p>제20조의4(문화관광체육부에 두는 과) ① ~ ⑥ (생략)</p>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43. 민간건축물 야간경관 지원사업	<p>⑦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2. (생략)</p>	⑦ -----.
<신 설>	44. 경관시범마을 만들기	<p>13. 가칭 광주문화관광공사 설립</p> <p>14. ~ 17. (생략)</p>	<삭 제>
<신 설>	45.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18. 김대중컨벤션센터 및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지도·감독</p> <p>19.·20. (생략)</p>	14.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46. 경관계획 수립 및 단위사업 추진	<신 설>	18. 김대중컨벤션센터 지도·감독
<신 설>	47.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⑧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2. (생략)</p>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48. LUC(세계빛도시연합) 총회에 관한 사항	<p>23.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재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0.01.01.></p>	20. 감정평가법인 등 -----
<신 설>	49.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21. (현행과 같음)
<신 설>	50. 총괄·공공건축가 선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p>24. (생략)</p> <p>25.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본호신설 2020.01.01.></p>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p>⑧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주거종합계획 수립·조정</p> <p>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업무</p> <p>3. 주택건설사업 건축계획 심의 업무</p> <p>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p> <p>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업무</p> <p>6.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 및 운영</p> <p>7.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관한 사항</p> <p>8.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업무 추진</p> <p>9.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환급 관련 업무</p> <p>10. 주택 불법 전매행위 수사(관리)업무에 관한 사항</p> <p>11. 전월세 보증금 분쟁 조정 추진</p> <p>12.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관리 업무</p> <p>13. 주거급여 지원사업 업무 추진</p> <p>14.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지원</p> <p>1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업무</p> <p>16.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p> <p>17.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업무 추진 및 총괄</p> <p>1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p> <p>19.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사업 추진</p> <p>20.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한 행정지도</p> <p>21.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자문위원, 지원단) 업무 추진</p> <p>22.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p>	<p>제20조의4(문화관광체육부에 두는 과) ① ~ ⑥ (생략)</p> <p>⑦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2. (생략)</p>	<p>제20조의4(문화관광체육부에 두는 과)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p> <p>1. ~ 12. (현행과 같음)</p>

26. 2019광주세계수업선수권대회 주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 <보호신설 2020.01.01>

27. (생략)

제20조의5(일자리경제실에 두는 과) ①·② (생략)

③ 일자리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략)

3. 여성·노인·청년·장애인·경제·문화 등 계층·분야별 일자리 창출 업무 총괄

4. ~ 24. (생략)

25.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추진

26. ~ 48. (생략)

④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16. 수출 진흥정책 수립·추진

17.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수출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

18. 수출·입 등 통상 관련 동향 파악·관리

19.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사업 추진

20. 삭제

21. ~ 24. (생략)

25.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보호신설 2020.01.01>

26. (생략)

⑤ 기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업단지 분양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3. 산업단지 리모델링화 사업

14.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15. ~ 1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⑥ 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

12. ~ 15. (생략)

⑦ (생략)

제21조(인공지능산업육성에 두는 과) ① 인공지능산업에 미래산업정책과·인공지능정책과·자동차산업과·에너지산업과·스마트시티과를 둔다.

<삭제>

27. (현행과 같음)

제20조의5(일자리경제실에 두는 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2. (현행과 같음)

3. 계층·분야별 -----

4. ~ 24. (현행과 같음)

<삭제>

26. ~ 48. (현행과 같음)

④ -----.

1. ~ 1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1. ~ 24. (현행과 같음)

<삭제>

26. (현행과 같음)

⑤ -----.

1. ~ 10.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5. ~ 18. (현행과 같음)

19. 수출 진흥정책 수립·추진

20.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수출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

21. 수출·입 등 통상 관련 동향 파악·관리

22.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사업 추진

⑥ -----.

1. ~ 10. (현행과 같음)

<삭제>

12. ~ 15.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인공지능산업육성에 두는 과) ① ----- 미래산업정책과·인공지능정책과·자동차산업과·에너지산업과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미래산업정책과장·인공지능정책과장·자동차산업과장 및 에너지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스마트시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미래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3. (생략)

④ 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보호신설 2020.01.01>

1. ~ 12. (생략)

<신설>

⑤·⑥ (생략)

⑥ 삭제

⑧ 스마트시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20.01.01. 종전 제7항에서 이동>

1.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수립·조정·시행

2.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기획·발굴 및 총괄 조정

3. 스마트시티 시스템 관리

4. 스마트시티 적용 기술 및 연관 산업 육성

5. 융합산업 종합 기획

6. IT융합산업·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7. ICT 및 3D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8. 지역 IT·SW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9.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및 지역 SW 융합지원에 관한 사항

10. IT·SW산업 육성 전문 인력양성

11. 호남권 SW품질역량사업 운영·지원

12.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계획 수립·조정

13. 빅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공공·민간기관 빅데이터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15.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6.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삭제

제22조의2(소방안전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안전본부에 소방행정과,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및 119특수구조단을 둔다.

②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임명하고, 소방행정과장, 방호예방과장, 구조구급과장, 119종합상황실장, 119특수구조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21. 안전체협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23. (생략)

② ----- 지방기술서기관 -----.

③ -----.

1. ~ 52. (현행과 같음)

53. ICT융합산업 종합 기획

54. IT융합산업·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55. ICT 및 3D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56. 지역 IT·SW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57.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및 지역 SW 융합지원에 관한 사항

58. IT·SW산업 육성 전문 인력양성

59. 호남권 SW품질역량사업 운영·지원

60. (현행 제53호와 같음)

④ -----.

1. ~ 12. (현행과 같음)

13.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⑥ (현행과 같음)

<삭제>

제22조의2(소방안전본부에 두는 과) ① -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 및 빛고을국민안전체협관 -----.

② -----

119특수구조단장, 빛고을국민안전체협관장 -----.

③ -----.

1. ~ 20. (현행과 같음)

<삭제>

22. 2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신 설>

제26조(하부조직)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식품의약품연구부·감염병연구부·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

제27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원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제28조(식품의약품연구부에 두는 과(科)) ①·② (생 략)

③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 10. (생 략)

④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식품 중 방사능 검사

11. (생 략)

⑤ ~ ⑦ (생 략)

제29조(환경연구부에 두는 과(科)) ①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대기연구과·생활환경과·먹는물검사과·폐기물분석과를 둔다.

②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하고, 각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하천 수질 오염도 검사

3. 환경측정망(대기, 수질)의 운영

4. 미세먼지 및 오존경보제 운영,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운영

5. 대기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조사

6. 대기 및 수질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

7. 소관분야에 관련된 시험·조사·연구

8.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조사

9.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기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2.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진동 측정

3. 환경 소음측정망의 운영

4. 유류중 황 함유량 검사

5. 측정분석 정도관리 운영(대기)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시민 안전체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시민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전시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관람·체험객의 교육 및 체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체험교육 운영통계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8. 교관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전시·체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청사·물품 관리,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운영보조인력(용역, 자원봉사)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하부조직) -----
-- 연구지원과·식품의약품연구부·감염병연구부·환경연구부 -----

제27조(연구지원과) ① 연구지원과장 -----

② 연구지원과장 -----

1. ~ 12. (현행과 같음)

제28조(식품의약품연구부에 두는 과(科))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7. (현행과 같음)

8. 식품 중 방사능 검사

9. ~ 11.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④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11.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환경연구부에 두는 과(科)) ① 환경연구부에 미세먼지분석과·물환경조사과·대기환경과·먹는물검사과·생활환경과·산업폐수과를 둔다.

②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하고, 각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미세먼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3. 미세먼지 및 오존경보제 운영

4.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운영

5. 대기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조사

6. 소관분야에 관련된 시험·조사·연구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물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 및 호소수 수질오염도 검사

2. 수질측정망 운영

3. 수질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

4.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조사

5. 물놀이행 수경시설 수질검사

6. 수처리계 규격검사

7. 생태독성 검사

8. 소관분야에 관련된 시험·조사·연구

⑤ 대기환경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6. 소관분야에 관련된 시험·조사·연구

7. 「주택법」에 따른 신규아파트 건설사업 전·후 도로교통소음 조사

8.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비산석면 검사

⑤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검사

2. 신축공동주택 사업장 오염도 검사

3.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오염도 검사

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5. 악취, 실내공기질, 환경유해인자(어린이활동공간)정도관리

6.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연구

⑥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수돗물, 먹는샘물, 약수터, 정수기통과수 등) 수질검사

2. 지하수(음용·농업·공업·생활용수) 수질검사

3. 민방위비상급수, 목욕장 욕수, 수영조 욕수 등 수질검사

4. 수중 이온물질 및 미량물질 성분 검사

5. 수처리계 규격검사

6. 지하수 측정망 수질검사

7. 수질 미생물 검사

8. 측정분석 정도관리 운영(먹는물)

9. 소관분야에 관련된 시험·조사·연구

⑦ 폐기물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수 배출시설 방류수 검사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검사

3. 중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4.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

5. 토양 오염 실태조사

6. 환경기초시설 검사요원 기술 교육

7. 측정분석 정도관리 운영(수질·폐기물·토양)

8. 토양 및 폐기물 중의 석면 검사

9. 소관분야에 관련된 시험·조사·연구

제57조의2(기전부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기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신호통신과장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차량설비과장 및 전기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 ⑤ (생 략)

제59조(하부조직) ① ~ ③ (생 략)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⑤ (생 략)

제71조(하부조직) ①·② (생 략)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④ 5·18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2. 유류중 황 함유량 검사

3.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오염도 검사

4.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비산석면 검사

5. 대기·악취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

6. 소관분야에 관련된 시험·조사·연구

⑥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수돗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정수기 등) 수질검사

2. 지하수(음용·농업·공업·생활용수) 수질검사

3. 민방위비상급수, 목욕장 욕수, 수영조 욕수 등 수질검사

4. 수중 이온물질 및 미량물질 성분 검사

5. 지하수 수질측정망 검사

6. 수질 미생물 검사

7. 먹는물 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

8. 소관분야에 관련된 시험·조사·연구

⑦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

2. 신축공동주택 사업장 오염도 검사

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

4. 실내공기질·환경유해인자(어린이활동공간)분야 정도관리

5.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 측정

6. 환경소음측정망의 운영

7. 「공동주택 교통소음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예측소음도 평가

8.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조사·연구

⑧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수 배출시설 방류수 검사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검사

3. 중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4.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

5. 토양 오염 실태조사

6. 환경기초시설 검사요원 기술 교육

7. 토양 및 폐기물 중의 석면 검사

8. 수질·폐기물·토양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

9. 소관분야에 관련된 시험·조사·연구

제57조의2(기전부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하부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4. (현행과 같음)

5. 디지털정보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하부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전시실·도서관 운영·관리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전시설·도서관 운영·관리	<삭제>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제79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생략)	제79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개발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발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1조(하부조직) ①·② (생략)	제81조(하부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투자유치부장은 개발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발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511호

도시관리계획(5·18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5·18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서구(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0. 12. 9.

광주광역시

1. 5·18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 개요

1. 공원구역 결정(변경)조서

공원번호	공원의 종류	공원의 명칭	면적(㎡)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10	역사공원	5·18역사공원	38,196	36,629.6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3-1 일원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최초) : 2008. 03. 24(광주광역시 고시 제39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 2017. 08. 01(광주광역시 고시 제155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2019. 08. 01(광주광역시 고시 제197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2020. 03. 03(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73호)
- 도시계획시설(공원)면적(변경) : 2020. 07. 01(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233호)

- 당초 38,196㎡ 변경 36,629.6㎡(감 1,566.4㎡)
- 5·18사적지와 무관한 사유지를 사적지에서 제척

3. 주요변경사항

- 도시계획시설(공원:5·18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18사적지와 무관한 사유지를 사적지에서 제척됨에 따라 역사공원 목적에 부합되는 구역으로 구역계 변경(감)
- 실시계획(시공) 현장여건에 따른 동선 및 시설위치 등 변경

4. 법적 검토사항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시설률(제한없음)	47.80%	42.43%	
건폐율(법정 20%이하)	2.2%	2.2%	

II. 5·18역사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설면적(㎡)	건축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계		38,196.0	826	1,748	36,629.6	815.80	1,737.80	
시설면적		18,260.0	826	1,748	15,543.8	-	-	
도로 및 광장		7,768.0	-	-	6,455.0	-	-	
도로		6,145.0	-	-	5,281.0	-	-	
광장		1,621.0	-	-	1,174.0	-	-	
조정시설	잔디마당	3,019.0	-	-	3,020.0	-	-	
휴양시설	휴게소	156.0	-	-	65.0	-	-	
교양시설	유아숲체험원 역사교육관 등	3,677.0	758	1,680	3,088.0	758.00	1,680.00	
편익시설	주차장, 화장실	3,640.0	68	68	2,915.8	57.8	57.8	
공원관리시설	공원표지석 등	-	-	-	-	-	-	
녹지및기타		19,936.0	-	-	21,085.8	-	-	
시설율(제한없음)		시설률:47.80%		시설률:42.43%		감: 5.37%		
건폐율(법정 20%)		건폐율:2.2%		건폐율:2.2%				

5·18역사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조서

2.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시설구분	부호	시설명	위치	변경전		변경후		면적(㎡)	공작물종감(㎡)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계	-	-	-	38,196.0	826	1,748	87	36,629.6	815.80	1,737.80	68	
도로 및 광장	소	계	-	7,768.0	-	-	-	6,455.0	-	-	감1,277㎡	
광장	1	광장	쌍촌동993-1 일원	1,623.0	-	-	-	1,174.0	-	-	감449㎡	
1-1	1-1	잔디마당	쌍촌동993-1 일원	30.0	-	-	-	29.0	-	-	감1㎡	
1-2	1-2	무인입장	쌍촌동993-35 일원	87.0	-	-	-	30.0	-	-	감57㎡ 위치이동	
1-3	1-3	중앙광장	쌍촌동993-1 일원	1,072.0	-	-	-	952.0	-	-	감120㎡	
1-4	1-4	5·18광장	쌍촌동993-35 일원	202.0	-	-	-	163.0	-	-	감39㎡	
1-5	1-5	도원광장	쌍촌동992-15 일원	192.0	-	-	-	-	-	-	폐지	
1-6	1-6	수정광장	쌍촌동995-13 일원	40.0	-	-	-	-	-	-	폐지	
조정	소	계	-	3,019.0	-	-	-	3,020.0	-	-	10	증1㎡
시설	2	잔디마당	쌍촌동992-2 일원	3,019.0	-	-	-	3,020.0	-	-	-	
1	1	참여의 벽	잔디마당	-	-	-	-	93-35 일원	-	-	1	위치이동
2	2	상징열주	쌍촌동993-35 일원	-	-	-	-	역사배움터 내	-	-	7	위치이동
3	3	역사의 벽	쌍촌동995-1	-	-	-	-	93-35 일원	-	-	1	
4	4	역사놀이	숲놀이체험원 내	-	-	-	-	역사놀이체험원 내	-	-	1	
휴양	소	계	-	156.0	-	-	-	65.0	-	-	36	감91㎡
시설	3	휴게소	쌍촌동995-1 일원	156.0	-	-	-	95-1 일원	65.0	-	-	
3-1	3-1	휴게소1	쌍촌동993-1 일원	43.0	-	-	-	-	-	-	-	폐지
3-2	3-2	휴게소2	쌍촌동995-13 일원	32.0	-	-	-	-	-	-	-	폐지
3-3	3-3	휴게소3	쌍촌동15-2 일원	16.0	-	-	-	-	-	-	-	폐지
3-4	3-4	휴게소4	쌍촌동15-3 일원	16.0	-	-	-	쌍촌동15-3 일원	16.0	-	-	
3-5	3-5	휴게소5	쌍촌동995-4 일원	49.0	-	-	-	쌍촌동995-4 일원	49.0	-	-	
5	5	파고라	공원 내	-	-	-	-	파고라	-	-	2	
6	6	벤치	공원 내	-	-	-	-	벤치	-	-	30	
7	7	앉음벽	공원 내	-	-	-	-	앉음벽	-	-	4	
8	8	통석벽	역사배움	-	-	-	-	통석벽	-	-	-	폐지

사설 구분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형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가)	시설형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가)			
묘양	소계	-	-	3,677.0	758.00	1,680.00	7	소계	-	3,088.0	758.00	1,680.00	8	감643㎡	
사설 4	유아시설형원	-	-	1,354.0	-	-	-	4	유아시설형원	-	1,277.0	-	-	감77㎡	
5	교육장(소) (옛 내부반납)	-	-	392.0	392.00	850.00	-	5	교육장(소) (옛 내부반납)	-	392.0	392.00	850.00	-	
6	역사교육센터 (옛 본관)	-	-	300.0	300.00	764.00	-	6	역사교육센터 (옛 본관)	-	300.0	300.00	764.00	-	
7	역사교과실 (옛 면회실)	-	-	66.0	66.00	66.00	-	7	역사교과실 (옛 면회실)	-	66.0	66.00	66.00	-	
8	옛 신원실	-	-	220.0	-	-	-	8	옛 신원실	-	220.0	-	-	-	
9	옛 505부대위병소	-	-	37.0	-	-	-	9	옛 505부대위병소	-	37.0	-	-	-	
10	옛 505부대연립관사	-	-	171.0	-	-	-	10	-	-	-	-	-	폐지	
11	역사배움터	-	-	977.0	-	-	-	11	역사배움터	-	636.0	-	-	감341㎡ 위치이동	
12	조합놀이터	-	-	-	-	-	3	조합놀이터	-	-	-	-	-	4층1조	
13	그네	-	-	-	-	-	1	시소	-	-	-	-	-	1평형변경	
14	공연장	-	-	160.0	-	-	-	14	공연장	-	160.0	-	-	위치이동	
15	공연장 스탠드	-	-	-	-	-	3	공연장 스탠드	-	-	-	-	-	3위치이동	
관리	소계	-	-	3,640.0	68.00	68.00	-	소계	-	2,915.8	57.80	57.80	-	감724.2㎡	
사설 12	주차장	-	-	3,572.0	-	-	-	12	주차장	-	2,858.0	-	-	-	감714㎡
12-1	주차장 1	-	-	2,747.0	-	-	-	12-1	주차장 1	-	1,984.0	-	-	-	감763㎡
12-2	주차장 2	-	-	547.0	-	-	-	12-2	주차장 2	-	547.0	-	-	-	-
12-3	주차장 3	-	-	278.0	-	-	-	12-3	주차장 3	-	327.0	-	-	-	증49㎡
16	화장실 1	-	-	37.0	37.00	37.00	-	16	화장실 1	-	26.5	26.52	26.52	-	감10.5㎡ 위치이동
17	화장실 2	-	-	31.0	31.00	31.00	-	17	화장실 2	-	31.3	31.28	31.28	-	증0.3㎡ 위치이동
관리	소계	-	-	-	-	-	24	소계	-	-	-	-	-	24	
사설 18	공원표지석	-	-	-	-	-	2	공원표지석	-	-	-	-	-	2	
19	사적기념물 안내판	-	-	-	-	-	5	사적기념물 안내판	-	-	-	-	-	5	
20	상징문주	-	-	-	-	-	1	상징문주	-	-	-	-	-	1	
21	블라드	-	-	-	-	-	16	블라드	-	-	-	-	-	16	
녹지	소계	-	-	19,884.0	-	-	-	소계	-	21,085.8	-	-	-	증1,201.8㎡	
녹지	녹지	-	-	19,884.0	-	-	-	녹지	-	21,085.8	-	-	-	증1,201.8㎡	

<계속>

3. 도로결정(변경)조사

구분	등급	유형	부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총계						6,145		
변경							5,281		
기정	소계						1,169		
변경							-		
폐지	중로	3	1	12.0	92	1,169	소로2-1	518광장	소로3류변경 (소로3-8)
기정	소계						4,673		
변경							4,990		
기정	소로	1	1	11.0	10	111	잔디마당	소로2-2	
변경	소로	1	1	11.0	17	194	소로3-7	소로2-2	
폐지	소로	1	2	8.0	30	244	서측진입로	주차장	
기정	소로	2	1	8.0	61	480	상무대로 북측	상무대로 남측	
기정	소로	2	2	8.0	126	975	쌍촌로 우측	쌍촌로 좌측	
폐지	소로	2	3	4.0	31	134	소로2-2	소로3-4	소로3류변경 (소로3-9)
기정	소로	3	1	3.0	210	712	소로3-1	중앙광장	
변경	소로	3	1	3.0	247	749	소로3-1	소로3-8	
기정	소로	3	2	3.0	16	166	소로3-3	518광장	
변경	소로	3	2	3.0	53	167	소로3-1	518광장	

기정	소로	3	3	3.0	26	101	소로3-1	중앙광장	위치변경
변경	소로	3	3	3.0	43	139	서측진입로	부진입광장	
기정	소로	3	4	4.0	217	894	소로2-2	소로3-4	
변경	소로	3	4	3.0	211	684	소로2-2	소로3-4	
기정	소로	3	5	3.0	60	200	소로3-1	부진입광장	
변경	소로	3	5	3.0	60	188	소로3-1	소로2-2	
기정	소로	3	6	3.0	84	283	소로1-2	소로2-2	위치변경
변경	소로	3	6	3.0	33	100	소로2-2	소로3-4	
기정	소로	3	7	3.0	139	373	518광장	위병소	
변경	소로	3	7	3.0	135	327	518광장	위병소	
신설	소로	3	8	7.0	93	656	소로2-1	518광장	
신설	소로	3	9	4.0	17	76	소로2-2	주차장2	
신설	소로	3	10	5.0	3	18	소로3-4	화장실2	
신설	소로	3	11	3.0	85	255	부진입광장	소로2-2	
기정	소계						303		
변경							291		
기정	산책로	1	2.5	53	149	북측진입로	소로3-1		
변경	산책로	1	2.0	66	167	부진입광장	소로3-1		
기정	산책로	2	1.8	81	154	부진입광장	518광장		
변경	산책로	2	1.5	81	124	소로3-5	518광장		

4. 토지조사

■ 편입토지조사 총괄표

지목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9	36,629.6	100.0	
대지	16	29,357.6	80.15	
도로	1	3,718	10.15	
임야	2	3,554	9.70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2068호

사직역사공원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광주광역시 사직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16조의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께서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0일

광주광역시장

1. 공원구역 결정조사

공원번호	공원의 종류	공원의 명칭	면적(㎡)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	주계공원 (역사공원)	사직공원	85,610	감)14,033.0	71,577.0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일원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 : 1943.04.19.(조선시가지 계획령)
- 조성계획결정 : 1990.06.19.(건고 제347호)
- 2020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제정비 결정(변경) : 2012. 7. 15(광고 2012-114호)
 - 근린공원 → 주계공원(역사공원)으로 변경
- 조성계획최종 : 2020.02.18.(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58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

- 공원면적 변경사유 : 광주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253호) 관련 도시계획실효에 따른 일부 변경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설명	수량	비고
교양시설	폐지	13	기념관		
	폐지	14	보육관		
	폐지	15	체험관		
	폐지	16	예절관		
	폐지	17	전시관		
	폐지	18	조형물(1)		
	폐지	19	조형물(2)		
편익시설	폐지	22-2	주차장2		
	폐지	24-3	화장실3		

등급	변경구분	유형	번호	복원(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부진입로(소로)	폐지	3	2	3	90.0	270.0	부진입	동쪽 주택가	영상예술공연장 앞	
산책로	폐지	3	2	3.5	63.0	206.0	산책로	연결로3-9	공중변소1	
	폐지	3	4	1.6	23.0	37.0	산책로	전시관	체험관	
	폐지	3	5	2.5	9.0	24.0	산책로	산책로3-4	주차장	
	폐지	3	6	1.5	46.0	70.0	산책로	주차장2	보육관	
	폐지	3	7	2.0	5.0	10.0	산책로	산책로3-6	체험관	
시설연결로	폐지	3	9	3.0	67.0	242.0	시설연결로	체험관	주진입로1-3	
	폐지	3	15	6.0	33.0	198.0	시설연결로	영상,예술,공연장	영상,문화센터	

사직역사공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문화권 사업’ 중 문화전당·교류권 사업에 포함된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아시아음악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어 음악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 중심지 조성이 필요

- 사직공원은 매년 9월 개최되는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 등 정기/비정기 공연이 수시로 개최되는 곳으로, 대규모 음악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연시설 설치가 필요
- 공원 내 공연장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공원조성계획 변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m ²)	건축물(m ²)		수량	비고
						바닥	연면적		
	기정		합계		85,610.00	4,051.69	10,533.50	-	
	변경				71,577.00	3,700.60	10,087.31	-	건폐율 : 5.2%
공원시설	기정		시설계		30,990.90	4,051.69	10,533.50	-	
	변경				28,523.30	3,700.60	10,087.31	-	시설율 : 39.8%
도로 및 광장	기정		소계		10,314.90	-	-	-	
	변경				9,406.30	-	-	-	
교양시설	기정		소계		12,842.00	3,524.91	9,657.72	-	
	변경				11,583.00	3,219.28	9,256.99	-	
편익시설	기정	11	영상예술공연장	사동 166-16대	2,890.00	290	290	1동	1층
	변경	11	영상예술공연장	사동 166-16대	3,217.00	494.16	494.16	1동	1층
녹지	기정		소계		54,619.10	-	-	-	
	변경				43,053.70	-	-	-	녹지율 : 60.2%

4. 법적검토사항

- 공원시설률 : 39.8% (법정 제한없음)
- 건 폐 율 : 5.2% (법정 20%이하)

5.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m ²)		건축규모(m ²)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총계	85,610.0	71,577.0	4,051.69	3,700.60	10,533.0	10,087.31	건폐율 5.2% (감 351.09m ²)
공원시설	30,990.9	28,523.3	4,051.69	3,700.60	10,533.0	10,087.31	시설률 39.8% (감 351.09m ²)
도로 및 광장	10,314.9	9,406.3	-	-	-	-	-
조정시설	266.0	266.0	-	-	*	-	-
휴양시설	1,793.0	1,793.0	59.52	59.52	59.52	59.52	-
운동시설	4,140.0	4,140.0	189.33	189.33	189.33	189.33	-
교양시설	12,842.0	11,583.0	3,524.91	3,219.28	9,657.72	9,256.99	-
편익시설	1,467.0	1,167.0	152.29	180.99	575.45	529.99	-
관리시설	168.0	168.0	51.48	51.48	51.48	51.48	-
녹지	54,619.0	43,053.7	-	-	-	-	녹지율 60.2% (감 11,565.3m ²)

6.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도서 : 계계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7. 열람기간 : 2020. 12. 10. ~ 2020. 12. 24.(14일간)

8.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문화기반조성과, 푸른도시사업소, 남구 공원복지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문화기반조성과 문효식(☎062-613-3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